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제외 대상을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에서 해당 연도에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변경함(안 제8조·제9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